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1 선고 2014가합5687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7. 1. 11 선고 2016나202836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1 선고 2014가합568761 판결

전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고1. 성남시

2. F

3. 대한민국

변론종결 2016. 4. 7.

판결 선고 2016. 4. 21.

주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성남시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F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, 원고 A에게 63/108 지분, 원고 B에게 15/108 지분, 원고 C에게 10/108 지분, 원고 D에게 10/108 지분, 원고 E에게 10/108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'합계'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G은 광주군 H 대 474평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을 사정받았다(기록상 사정받은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, 뒤에서 보는 망 G의 사망일 이전임은 명백하다).

나. 망 G은 1929. 5. 1. 사망하였고, 당시 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자인 망 I가 단독으로 망 G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.

다. 이후 망 I가 1970. 1. 16. 사망하였고,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망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,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63/108, 원고 B 15/108, 원고 C, 원고 D, 원고 E이 각 10/108이다.

라. 한편,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는데, 피고 대한민국은 1954. 11. 5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9. 11. 8. J에게 이를 매도하였다.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하여 10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.

마. 피고 성남시는 1994. 9. 2.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바. 피고 F의 부친 망 K는 1970. 3. 14. '1970. 3. 10. 매매'를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

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망 K가 2003년 사망함에 따라 2003. 8. 20. 피고 F이 '2003. 8. 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'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사. 2015. 12. 28. 기준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124,020,000원이고,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611,328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나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감정인 L의 감정 결과,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주장 내용

가. 피고 성남시,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

이 사건 제1,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망 G에게 사정되었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,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,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1, 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.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, 2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

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. 그 결과 피고 성남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, 피고 F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반면,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.

이에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124,020,000원 중 일부인 50,000,000원,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611,328,000원 중 일부인 60,000,000원 합계 110,000,000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.

3. 피고 성남시,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는 망 G이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망 I를 거쳐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, 피고 대한민국이 별다른 승계사실을 주장·증명하지 못한 이상 1954. 11. 5.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원인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제1,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성남시,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성남시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및 피고 F의 점유취득시효항변

피고 성남시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, 피고 F(또는 그 부친인 망 K)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위 피고들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,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인정되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54. 11. 5.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을 받은 망 G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,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,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 된 이 사건 제1, 2토지가 각 피고 성남시, F의 소유로 되는 반면 망 G의 후손들인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.

2) 귀책사유의 존부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에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(갑 제1호증)에 망 G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

있고, ② 이 사건 토지의 복구대장(갑 제3호증의 1)의 소유자란에도 망 G이 기재되어 있으므로,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확립된 것인바,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,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이기는 하지만,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가 사정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(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다499 판결)도 있는 점(이상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참조), ③ 원고들은 위 복구대장이 복구된 것은 1953. 3. 20.경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이미 위 복구대장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, 위 복구대장 자체의 기재는 물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그 당시 위 복구대장이 존재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, 원고들이 거시하고 있는 위 ①, ②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1954. 11. 5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망 G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나. 소결

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,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5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권혁중

판사박현숙

판사정희철

별지